



특허청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6. 26.(일) 12:00	배포 일시	2022. 6. 24.(금) 14:30
담당 부서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책임자	과 장 윤기웅 (042-481-8321)
		담당자	사무관 박성철 (042-481-5399)

1년 이내 공지된 기술, 특허 받을 수 있다

- 특허청, 공지에외주장 제도 이용현황 발표 -

- 20년간('01~'20) 총 76,063건 '06년 '12년 제도 요건 완화 후 큰 폭 증가 -

- 미국과는 제도 통일되었으나, 유럽·중국 등과 제도 조화 필요 -

'ㄱ'교수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에 성공한 후,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였다. 그러나 'ㄱ'교수가 해당 기술을 2개월 전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공개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결과를 통지받았다. 해결방안을 찾던 중, 특허청이 보내온 통지서 하단에서 공지에외주장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발견하였고, 기간 내에 공지에외주장을 신청하여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었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20년간('01년~'20년) 76,0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에외주장 제도가 이용되었으며, 연도별 공지에외주장 건수는 '01년 732건에서 '20년 5,346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 공지에외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발명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 (공지형태 요건) ①출원인이 공지한 경우 ②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기간 요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
-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연구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유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54.1%), 연구기관·공공기관(16.3%), 중소기업(11.0%), 내국인 개인(8.6%), 대기업(4.9%), 중견기업(2.8%), 순으로 공지에외주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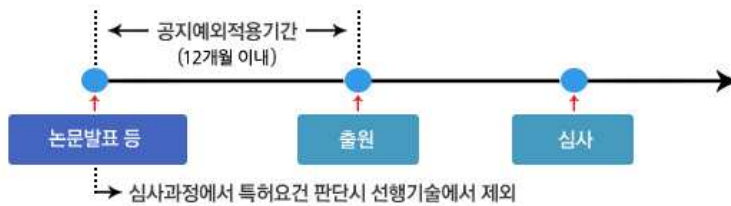
- 특히, 출원건수 대비 공지예외주장 비율('16년~'20년)은 대학(20.1%), 연구기관·공공기관(8.4%), 비영리기관(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기업(0.6%), 중견기업(1.4%), 중소기업(1.3%) 등 기업들의 이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대학들이 기술개발 후 논문을 먼저 발표한 다음 특허출원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업들은 다른 기업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 후 즉시 출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해외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공지예외 신청기간이 12개월이고, 모든 형태의 공지에 대해 공지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 중국 등의 공지예외 신청기간은 6개월로 짧고, 공지형태는 유럽은 국제박람회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중국은 중국정부가 주관·승인한 국제전람회 및 규정된 학술회의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 한편, 특허청은 공지형태 제한 완화('06년), 신청기간 연장('12년), 보완제도 도입('15년) 등 규제완화를 위한 국내제도 개선과 아울러 해외진출 출원인들의 편익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의 등에서 공지예외 요건의 국제적인 조화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그동안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결과, 공지예외주장 신청건수가 연간 5천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규제 완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특허를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 “다만, 해외출원 시 미국을 제외한 유럽, 중국 등에서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공지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을 권장하며, 특허청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발명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지예외 요건 등 특허제도의 국제적인 조화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공지예외주장 제도

□ 개요

- (내용)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경우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발명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도
- * (제도 취지) 자기의 공개로 인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측면과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연구결과의 공개가 늦어져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 고려



- (공지형태 요건) ①출원인 자신이 공지한 경우(출원공개 또는 등록 공고된 경우 제외), ②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 (기간 요건) 공지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

□ 신청 방법

- (출원 시) 특허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 관련 취지를 적은 후 증명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출원 이후) 보정기간 또는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전(최대 3개월) 기간에 공지예외주장 관련 취지를 적은 서류와 증명서류를 제출

□ 주요 개정 경과



참고 2

공지에외주장 제도 이용현황

□ 연도별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및 공지에외주장 건수('01년-'20년)

구분(건)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특실 출원	145,416	145,329	159,477	177,868	198,096	199,097	193,553	188,037	180,667	183,762	190,778
공지에외 주장	732	756	941	1026	1249	1776	2429	2892	3069	3647	3,928
구분(건)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특실 출원	201,339	215,557	219,476	222,405	216,597	211,584	216,224	224,422	231,740	4060,597	
공지에외 주장	4,811	5,550	6,151	6,961	6,758	6,132	5,953	5,956	5,346	76,860	

- 우리청은 공지에외주장의 적용기간, 공지형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공지에외주장 출원 건수도 증가해옴
 - 연도별 공지에외주장 건수는 '01년(732건)부터 '15년(6,961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20년(5,346건)까지 꾸준히 유지 중*
 - * 16년 이후 수치는 향후 심사청구 및 공지에외 보완신청됨에 따라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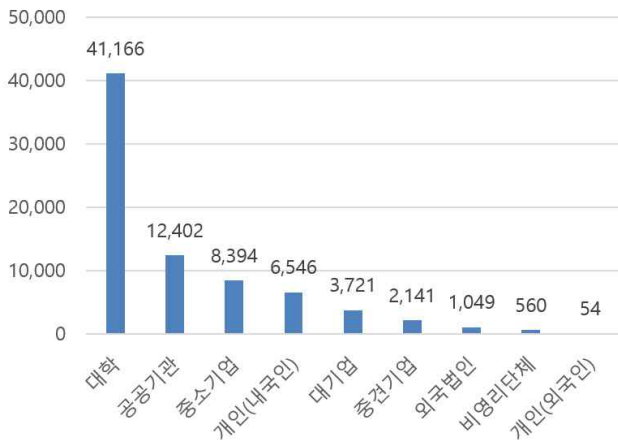
연도별 공지에외주장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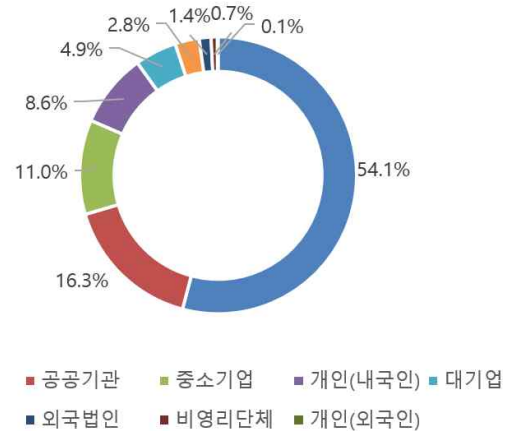
□ 출원인 유형별 공지에외주장 건수('01년-'20년)

구분(건)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대기업	67	65	62	61	93	123	167	255	219	212	216
중견기업	13	20	29	18	22	54	123	94	85	115	197
중소기업	149	105	123	94	128	227	287	331	344	372	423
대학	89	138	224	320	452	744	1,128	1,432	1,567	1,980	2,097
공공연구기관	192	243	286	275	359	389	412	430	498	543	612
개인(내국인)	193	161	193	234	170	204	278	309	328	381	323
비영리단체	2	3	3	2	1	4	7	10	6	10	18
외국법인	20	18	21	22	22	30	26	30	21	32	40
개인(외국인)	7	3	0	0	2	1	1	1	1	2	2
구분(건)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대기업	285	274	293	218	232	240	189	279	171	3,799	
중견기업	220	181	123	154	141	109	145	148	150	2,166	
중소기업	543	540	635	694	710	664	656	724	645	8,516	
대학	2,613	3,066	3,564	4,130	4,025	3,572	3,519	3,394	3,112	41,266	
공공연구기관	687	957	906	1,068	1,053	963	879	873	777	12,545	
개인(내국인)	371	425	482	530	454	405	403	355	347	6,861	
비영리단체	32	35	47	69	67	78	69	56	41	564	
외국법인	57	70	95	90	71	97	87	113	87	1,058	
개인(외국인)	3	2	6	8	4	4	3	1	3	55	
기타	0	0	0	0	1	0	3	13	13	30	

출원인 유형별 공지에외주장 건수



출원인 유형별 공지에외주장 출원 비율



□ 출원인 유형별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수('16년~'20년)

구분(건)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대기업	37,508	33,808	35,476	39,254	39,846	185,892
중견기업	10,811	10,263	10,282	9,817	9,519	50,692
중소기업	48,138	47,474	48,201	51,980	58,859	254,652
대학	18,311	17,471	17,464	16,909	17,602	87,757
공공·연구기관	10,725	10,535	10,513	11,084	11,401	54,258
개인(내국인)	44,561	45,022	45,433	46,929	47,163	229,108
비영리단체	762	906	926	603	685	3,882
외국법인	44,547	44,837	46,690	46,630	45,621	228,325
개인(외국인)	1,231	1,267	1,205	1,214	1,038	5,955
기타	3	1	34	2	6	46

□ 출원인 유형별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대비 공지에외주장 비율

구분(건)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평균
대기업	0.6%	0.7%	0.5%	0.7%	0.4%	0.6%
중견기업	1.3%	1.1%	1.4%	1.5%	1.6%	1.4%
중소기업	1.5%	1.4%	1.4%	1.4%	1.1%	1.3%
대학	22.0%	20.4%	20.1%	20.1%	17.7%	20.1%
공공·연구기관	9.8%	9.1%	8.4%	7.9%	6.8%	8.4%
개인(내국인)	1.0%	0.9%	0.9%	0.8%	0.7%	0.9%
비영리단체	8.8%	8.6%	7.5%	9.3%	6.0%	8.0%
외국법인	0.2%	0.2%	0.2%	0.2%	0.2%	0.2%
개인(외국인)	0.3%	0.3%	0.2%	0.1%	0.3%	0.3%

출원인 유형별 출원건수 대비 공지에외주장 비율('16년~'20년)

